영등포구의회
제142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12. 4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8. 11. 19.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개정(제안) 이유

- 2008년 3월21일 「도로법」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, 점용료 산정기준 중 「도로법 시행령」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법령이 규정한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차량 진·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,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인하하며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점용료 기준을 신설함 **(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)**

-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**(별표1 비고 제2호)**

- 수도관·전력구 등 지하매설 점용물 중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함 **(별표1 비고 제5호)**

- 점용료 산정기준 비고조항 중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버스판매대·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연간 점용료가 7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700,000만원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함 **(별표1 비고 제7호, 비고 제8호, 비고 제11호)**

- 개정된 「도로법」에 맞게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, 기타 용어 및 단위표시를 알기 쉽게 정비함 **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 제9조, 제10조, 별표2)**

관련법규

- 「도로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

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서울특별시, 중랑구, 동대문구, 노원구, 강동구, 강서구, 마포구

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도로법」(2008.3.21개정) 및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(2008.9.30개정)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중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·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- **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**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차량 진·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,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인하하며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점용료 기준을 신설하고

- **안 별표1 비고 제2호는**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 하였으며

- **안 별표1 비고 제7호, 제8호, 제11호는** 점용료 산정기준 비고 조항 중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, 버스판매대·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연간 점용료가 7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700,000원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며

- **안 제3조, 제4조, 제5조 제9조, 제10조, 별표2에는** 개정된 「도로법」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12. 4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참고자료 : 관련법령

관 련 법 령

도로법 시행령[일부개정 2008.2.29 대통령령 제20722호]

제26조의2 (점용료의 산정기준)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별표 2] 점용료산정기준표(제26조의2제1항관련)

비고 1. 소재지 중 "갑지"는 특별시를, "을지"는 광역시(읍·면지역을 제외한다)를, "병지"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.

2.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로 한다.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.

3.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 의 1년으로 하고,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
4. 삭제 <2007.1.5>

5. 광고탑,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

6.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.(예 : 1,950원→1,900원)

6의2.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·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

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.

6의3.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.

7.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,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.

8.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

[일부개정 2008.09.30 조례 제4672호]

제2조(도로점용허가) 공작물·물건·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4조제5항제11호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광고탑, 광고판,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2. 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. 다만,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.

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「도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1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.

[별표 1]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관련)

점용물의 종류		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
			점용단위	기간단위	
4. 주유소·주차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화물터미널·자동차수리소·승강대·화물적치장·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	진·출입로	자동차관련시설(주유소·주차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화물터미널·자동차수리소·승강대·화물적치장·휴게소 등)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
		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·입로			토지가격에 0.020을 곱한 금액
7. 노점·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	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
	노점·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				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
	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	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10.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·물건 및 시설	농업 및 식물재배,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	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

※ 비고

1.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.